

[별지 제13호서식]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

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

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 중 개인의 경우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고, 각각의 경력 또는 실적 등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개인 자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4가지 유형 중 최소한 1가지 유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조합 등록이 가능

1. 전문개인투자자 해당 여부

구분	성명	등록번호	등록일	비고
1	○○○	제0000-00호	'00.00.00	

※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 별첨 필수

2.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 보유 요건 충족 여부

* 조합 운영 경력은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합의 운용기간을 합산하므로 복수의 조합을 운용한 경우는 조합별로 각각 현황을 기입 요망

구분	개인투자조합명	조합 등록일	조합 해산일(예정일)	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한 기간(조합등록 신청일 기준)
1	○○○	'00.00.00	'00.00.00	'00.00.00~'00.00.00 (00개월)
2				
3				
4				
:				

※ 운용 경력을 증빙하는 자료 별첨 필수

3.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중 해당 여부

업무 수행 경력 요건 내용	충족 여부 (해당되는 경우에 '○' 표시)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	-
1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	
2)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	
3)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	
4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	
5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	

